

채 권 상 계 신 청 서

사건번호 타경 호

채 권 자

채무자

위 사건에 관하여 매수인이 납부할 매각대금을 민사집행법 제143조 제2항에 의
하여 매수인이 채권자로서 배당받을 금액한도로 상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년 월 일

매수인 겸 채권자 (인)
연락처(☎)

지방법원

귀중